

공시송달공고

1. 제 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시송달 기간 : 2020.06.26. ~ 2020.07.24.(29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자 : 윤재* 외 81명 [별첨]

4. 공시송달 내용

- 가. 폐기물관리법 제8조(폐기물 투기금지)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(독촉) 통지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.
- 나. 처분사전통지 대상자의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부평구청 자원순환과(☎ 509-6605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2011.07.06.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%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감경 받고자 할 경우 의견 제출기한 내 부평구청 자원순환과로 연락하시어 감경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(과태료 감경)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, 3급 이상 장애인,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,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부평구청 자원순환과로 우편제출하시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 조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(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% 감경)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.
- 라.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6월 26일

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